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구미 형곡2 주공아파트는 29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경관의 악화를 초래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수립대상지(공동주택) 요건에 해당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주거공간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고
신설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73번지 일원	20,902	

3. 정비구역현황

□ 인구 및 가구수

구 분	인 구 수			가 구 수		
	현 황	계 획	증·감	현 황	계 획	증·감
계획구역	725	1,326	증) 601	250	491	증) 241

□ 건축물 현황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용도	구조	규모(m) [연면적]	연도별 사용승인	경과년도	건폐율 용적율	비고
	계		15,367.94				
	아파트 (8동)	철근 콘크리트	14,915.00	1986.3.10	20~29년	· 대지면적:20,493㎡ · 건축면적:3,221.09㎡ · 연면적:15,367.94㎡ · 건폐율:15.72% · 용적율:74.9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
	복합상가 (1동)	철근 콘크리트	452.94	1984.3.21	20~29년		

□ 주민현황 및 동의율 현황

구 분	총세대수	동의대상자 및 동의율			비 고
		동의대상자	동 의 자	동의율	
형곡2 주공 아파트	250세대	256명	256명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의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4. 관련법령 : 의회 의견청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2011.4.14, 2012.2.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7의2. 삭제 <2009.4.22>
-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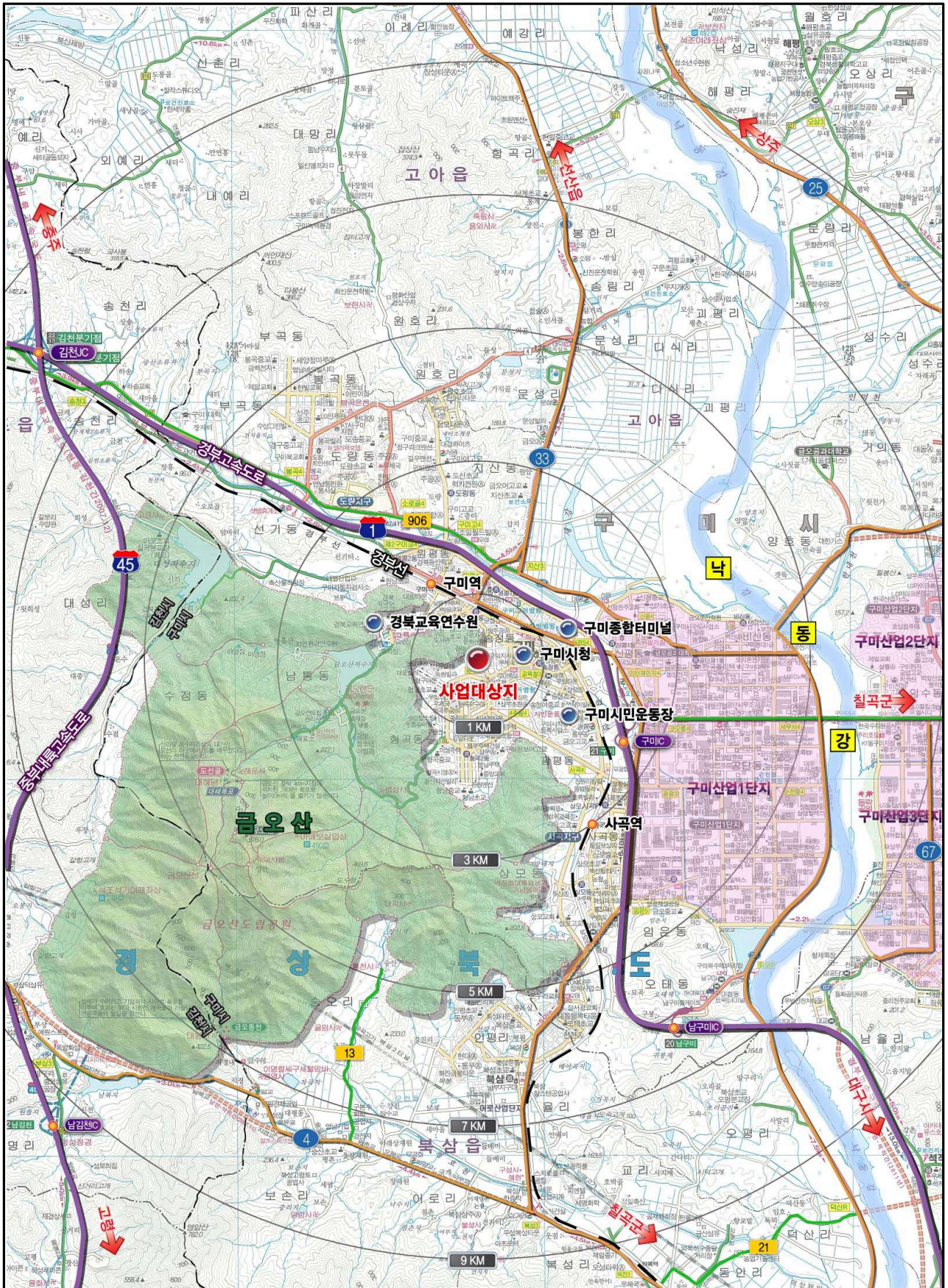
5. 붙임

1)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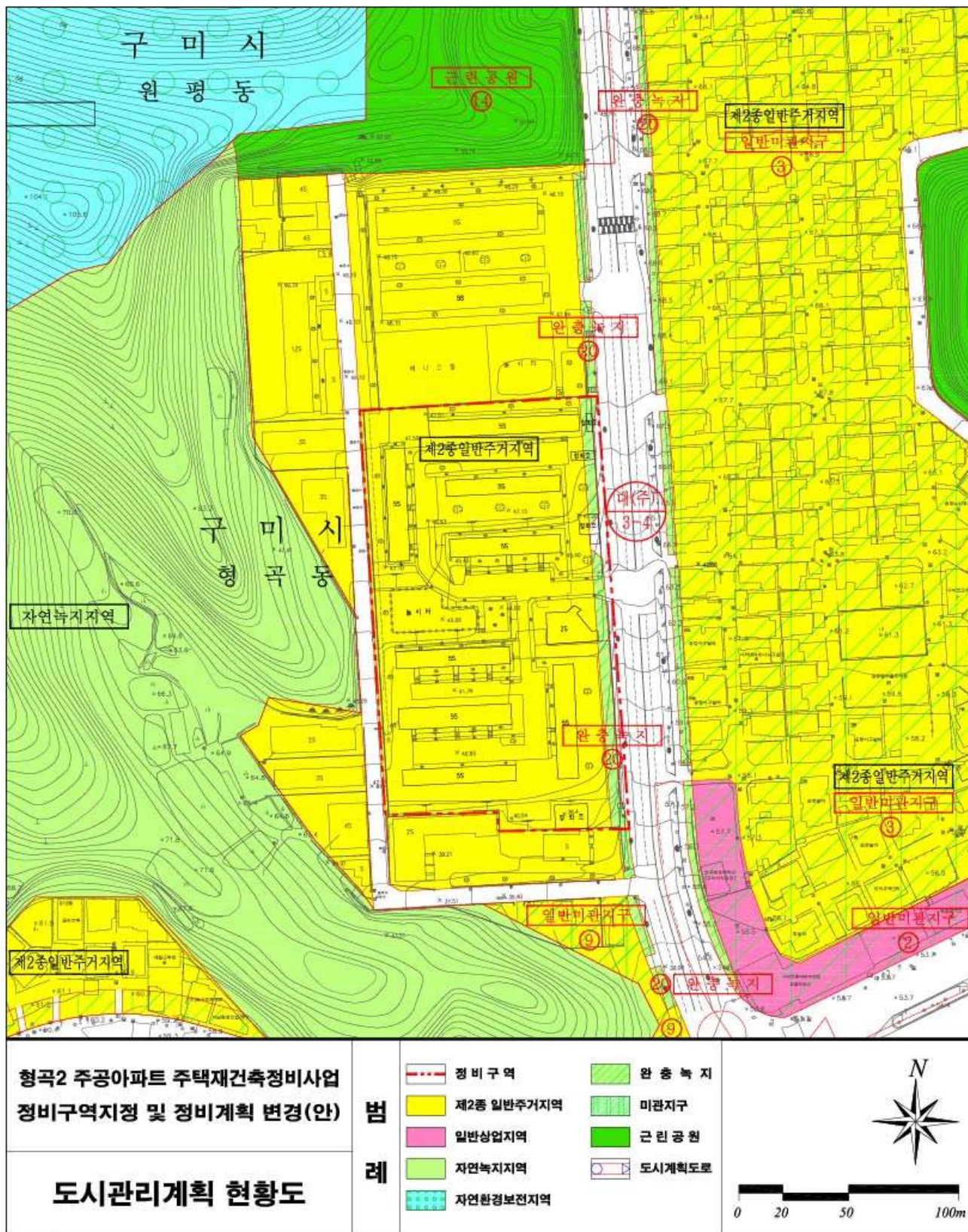
2)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3) 정비계획변경(안)도

위 치 도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정비계획 변경(안)도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73번지 일원	20,902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4	25~28	주간선도로	980	광로2-2	대로1-2	일반 도로		1977.8.23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0	녹지	완충녹지	대로3-4호선변	9,720	감) 10	9,710	1987.2.7	제2종일반 주거지역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	녹지	·완충녹지 일부구간 위치변경 A = 9,720m ² 9,710m ² (감 10m ²)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및 면적감소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변경있음)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개소)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구미 형곡동 73번지 일대 사업지구내	612.5	725.6	증)113.1	
	근린생활시설		240.5	500.0	증)259.5	
	주민공동시설		321.7	361.7	증) 40.0	
	경로당		91.2	120.0	증) 28.8	
	보육시설		106.4	150.0	증) 43.6	
	문고		60.1	100.0	증) 39.9	
부대시설	휴게시설	구미 형곡동 73번지 일대 사업지구내	1개소	1개소	-	
	관리사무소		113.4	90.0	감) 23.4	
	경비실		-	47.2	증) 47.2	2개소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illegible]

○ 용적률 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대통령령 제24155호)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적용

< 사업구역 지정현황 >

위 치	사업유형	기준 용적률(조례)	법정 용적률(법령)
구미시 형곡동 73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50%	150% ~ 250%

<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부지 (20,902㎡)			
현 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비 고
	기준용적률	250%	
	사업대상지 면적	20,902㎡	정비구역 면적
	기준 대지면적	20,493㎡	지목상 대지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1,612㎡	
	인센티브 제외면적	409㎡	공유지(구미시)
	인센티브 적용면적	1,203㎡	공유지 제외면적
개발가능 용적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1항1호나목)	■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times (\text{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times \text{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div \text{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250\% + [1.5 \times (1,203\text{㎡} \times 250\%) \div (20,493\text{㎡} - 1,203\text{㎡})]$ $\approx 273.39\%$ • 따라서 본 예정구역에서 개발가능 용적률은 273.39%임		

-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상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 용적률은 269.43%임

※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 설치비용 산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시행인가시 최종 용적률 확정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사업지내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 화재 : 지구내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을 수립 • 수해 : 계획구역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을 감안하여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에 설치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학교시설 현황

< 1km이내 학교시설 현황 >

구 분	학급수(학급)	학생수(명)	학급당 학생수	비 고
합 계	124	3,562	-	
금오초등학교	43	1,233	28.7	
형일초등학교	34	934	27.5	
형곡초등학교	47	1,395	29.7	

자료)학교알리미 (2012.04.01기준)

나. 교육환경 보호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환경	• 사업대상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주변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은 불허하여 최대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
통학환경	• 사업대상지 주변 주통학로는 사업지 북측의 금오초등학교와 연결되는 도로이며 보차분리 도로임에 따라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도는 높은 편임 • 주통학로 입구에 안전표지판(과속방지 및 어린이보호) 설치 • 교차로부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반사경을 설치

8.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자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변경		
관리처분 계획에 의함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250세대 → 402세대 (증) 152세대	250세대 → 491세대 (증) 241세대	해당사항 없음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있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4	25~28	주간선도로	980	광로2-2	대로1-2	일반 도로		1977.8.23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0	녹지	완충녹지	대로3-4호선변	9,720	감) 10	9,710	1987.2.7	제2종일반 주거지역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	녹지	·완충녹지 일부구간 위치변경 A = 9,720m ² 9,710m ² (감 10m ²)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및 면 적감소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결정구분	구역명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902	구미시 형곡동 73번지 일원	19,290	-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변경있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A1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율	25.57%이하
		용 적률	269.43%이하
		높이(층수)	22층 이하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토록하며 별도의 건축선 계획은 설정하지 않음

10. 기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²)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902	구미시 형곡동 73번지 일원	9			9		<현황> -공동주택 8동 -근린생활시설 1동 <계획> -공동주택 6동 -근린생활시설 1동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기반시설면적		무상귀속	국·공유지	비 고
		면적(m ²)	비율(%)			
정비구역		20,902	-	-	-	
합 계		1,612	7.7	1,203	409	
도로	대로 3-4	636	3.0	279	357	
녹지	완충녹지	976	4.7	924	52	

라.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바.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사.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구역명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902	구미시 형곡동 73번지 일원	19,290	-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검토조치계획 (2013. 01. 28. ~ 02. 15)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의견	검토조치계획	비고
교 통 행정과	• 아파트 주출입구 2개차로로 확폭	• 아파트 진출로 편도2개차로 확보	반영
	• 주출입구 교차로 SB구간 좌회전 추가 및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 신시로 상의 사업지 입구교차로 북측유 입부(SB구간) 좌회전전용차로 확보	반영
	• 주출입구에 구미경찰서와 협의하여 속 도저감시설 설치	• 신시로 상의 사업지 입구교차로에속도 저감시설 설치(구미경찰서와 협의)	반영
	• 신시로 신호교차로에 대한 신호연동DB 구축	• 신시로 상의 신호교차로에 대한 신호연 동DB 구축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추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구미경찰 서와 별도 협의	• 사업준공 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와 관련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따른 협의결과 기 심의 의결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별도로 교통영향분 석 ·개선대책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를 득하시기 바람	• 추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관련 질 차(변경심의)를 득하겠음	반영
사 회 복지과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법에 관한 관련법규에 대한 사항은 추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세부상세계 획 제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재협의하도록 하 겠음	반영
	• 영유아시설 설치기준 등 관계법령에 대 한 적합여부 및 기타 의견에 대한 협의사 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세 부상세계획 제출시 재검토 ·협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재협의하도록 하 겠음	반영
환 경 위생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 43조 별표2(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동법 제 59조 별표 4에 해당될 시 대구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 협의대상임	• 본 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 (경북 2007-352)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반영
	•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대상사업이 나 현재 본 평가서에는 배출부하량이 산 정되지 않아 재할당이 불가하오니 사업부 서에서는 사업시행전에 수질오염총량검토 서를 제출하여 개발할당부하량 재협의 후 사업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수질오염총량검토 서를 제출하여 개발할당부하량에 대해 재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의견	검토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 4조 제 8항 규정에 의하여 완화적용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겠으며, 용적률 완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하겠음	반영
공 원 녹지과	조경사업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	-
도로과	의견없음	-	-
형곡1동 사무소	의견없음	-	-
구 미 경찰서	아파트 진출로 편도 1차로 → 편도 2차로로 변경	아파트 진출로 편도 2개차로 확보	반영
	사업지 입구 횡단보도 형곡사거리 방향으로 위치 변경	신시로 상의 사업지 입구교차로 횡단보도 위치를 남측으로 이설	반영
	형곡1주공삼거리 → 신시로 201로 좌회전 가능토록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신시로상의 사업지 입구교차로 북측유입부(SB구간) 좌회전전용차로 확보	반영
	사업지 입구 네거리 전방에 노면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신시로 상의 사업지와 접하는 경사로구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반영
	사업 준공전 교통안전시설물 별도 협의	사업준공 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구 미 교육청	동 지역(형곡1동 2동 1반 ~ 8반)은 금오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학교의 학생수용 여건을 검토한 결과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주택건축 승인시에는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분양시 금오초등학교 통학구역임을 명시하여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분양시 통학구역(금오초등학교)을 명시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주택건축 세대수나 일정변경이 있을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수용 판단을 위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예정일(가능한 입주일을 년도말로 조정), 분양계약자의 아동수 등 협조자료 요청시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조하기 바람	변경사항이 있을시 재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협조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반영

□ 관련부서 재협의의견 및 검토조치계획 (2013. 03. 13. ~ 03. 27)

관련기관 및 부서	보완내용	검토조치계획	비고
교 통 행정과	사업시행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변경)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 바람	사업시행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변경)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반영
도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시 포함되어야 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같은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시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반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라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반영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의 충분한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의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반영
구 미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업시행시 별도 협의 바람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업시행시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반영

□ 정비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 의견내용 및 검토조치계획(2013. 4. 12)

○ 일 시 : 2013. 4. 12 14시

○ 장 소 : 구미시 형곡1동사무소 2층 회의실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검토조치계획	비고
주민1	• 용적률 산정시 사유지 (1,203㎡)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유지를 포함할 경우 사용가능한 대지면적이 증가함으로 기부채납을 아니하거나, 기부채납시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상 용적률 250%, 계획용적률 269.43%)를 적용하여 계획하였음	기반영
	• 당해 정비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요청	• 현재 대상지는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현 정비계획(변경)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미반영
	• 현 정비계획변경(안)으로 추진시 예정시공시기	• 2014년 상반기로 예상됨	-
주민2	• 주민설명회의 취지와 왜 정비계획을 변경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 주민설명회의 개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시수행하여야 할 행정절차이며, 정비계획의 변경은 시공사 선정후 사업여건 변화 및 향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세대수 및 평형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 지하3층의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 건축계획상 지하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계획함	-
주민3	• 아이들을 위한 금호초등학교까지의 도로계획 여부	• 정비계획수립시 정비구역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계획 또는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금호초등학교까지의 도로계획은 없음	-

□ 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관련 의견내용 및 검토조치계획

구분	의견자	의견내용	검토조치계획	비고
1		해 당 없 음		
2				
3				
4				
5				